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0. 9.23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0년 9월 6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다. 상정일자 : 2000년 9월 23일(제179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도청 복지환경국장 김선웅)

가. 제안이유

○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시설 위치를 현주소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설치 관계법령 및 복지시설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

- 장애인복지법 "제38조"를 "제49조"로 변경(안 제1조)
- 복지시설 주소를 충주시 호암동 "산 751-1번지"에서 산 "751-7번지"로 함(안 제2조제1항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박범수)

○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설치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관련조문 및 복지시설의 주소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 안 가 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 부 서 류

가.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의안번호	제 **333** 호
의 결 년 월 일	2000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년월일	2000년 9 월 일

법무통계담당관실 심사필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3

제출년월일 : 2000. 9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○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시설 위치를 현주소로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조례설치 관계법령 및 복지시설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

- 장애인복지법 "제38조"를 "제49조"로 변경(안 제1조)
- 복지시설 주소를 충주시 호암동 "산 751-1번지"에서 "산 751-7번지"로 함(안 제2조제1항)

3. 의안전문 : 별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장애인복지법 제38조 "를 "장애인복지법 제49조"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"충주시 호암동 산 751-1번지"을 "충주시 호암동 산 751-7번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시설(이하"복지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..... **장애인 복지법 제49조** ....
제2조(위치) ①복지시설은 충주시 호암동 산 751-1번지에 둔다. ② (생 략)	제2조(위치) ①..... **충주시 호암동 산 751-7번지** ..... ② (현행과 같음)